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1. 7. 9.(금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박성원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1년 6월 30일
- 회부일자: 2021년 7월 2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,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)
- 집행기준(안 제4조)
- 사용제한(안 제5조)
- 사용내역 공개(안 제6조)
- 정보공개범위 등(안 제7조)
- 소속 직원 교육 및 점검(안 제8조)
- 충청북도의회 자료제출(안 제9조)
- 위반조치(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,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- 안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및 지출서류 작성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, 안 제5조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 제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 안 제6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면서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을 정하였음.
- 안 제7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, 안 제8조에서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,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9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10조에서는 본 조례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환수,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, 안 제11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